

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1-49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5월 일

제출자 : 강서구청장

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「지방일괄이양법」 시행에 따라 자치구로 이양되는 사무 중 구에서 동이나 보건소로 재위임하는 사무를 추가하고, 그간의 상위법령 제·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일괄이양법」 시행 및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

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신설

-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의 보급에 관한 사무
-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

나. 자치구 권한 사무 중 위임사무에서 누락된 사무 신설

-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 등 13개 사무

다. 사무명,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 정비

-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등 9개 사무

라. 상위법령 개·폐에 따른 사무의 삭제

-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사무

마. 그 밖에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- 2)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제3조
- 3) 「지방일괄이양법」 제21조, 제43조
- 모자보건법 제12조, 의료기기법 제16조·제33조·제36조
- 4)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, 제6조의3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: 해당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 예고: 생략

※ 행정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사항(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)

- 2) 규제사전심사: 해당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
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 없음

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위임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 및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 소장, 동장 및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임의 기준 등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허가·인가·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,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,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3조(지휘감독 및 책임)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,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.

제4조(사전승인 등의 억제)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 기관에게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.

제5조(위임사무)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, 동장 및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.

② 별표에서 허가·인가·신고·등록·면허·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제3조(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 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동장에게 신고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,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라 인용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[별표]

위 임 사 무

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<p>1.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</p> <p>가. 무보직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·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, 구의회 소속 별정직·임기제공무원과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3조의 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임용</p> <p>나. 무보직 6급 및 7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</p> <p>다. 소속공무원에 대한 승급</p>	<p>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제2항</p> <p>○ 「지방자치법」 제91조제2항</p> <p>○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3조의2</p>	<p>구 의 회 사 무 국 장</p>
<p>2. 매장·화장 및 개장의 신고</p> <p>3. 종량제 실시 제외대상 대형폐기물의 수집·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</p> <p>4.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</p> <p>가. 감염병의 표본감시</p> <p>나. 감염병 역학조사</p> <p>다. 예방접종의 실시 및 공고</p> <p>라. 예방접종증명서 발급</p> <p>마. 예방접종 기록의 보존 및 보고</p> <p>바.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</p> <p>사.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</p>	<p>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조제2항</p> <p>○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제6조</p> <p>○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</p> <p>○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」 제29조제2항</p> <p>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</p> <p>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</p> <p>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, 제25조, 제26조</p> <p>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7조</p> <p>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</p> <p>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</p> <p>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</p>	<p>보 건 소 장</p> <p>구 의 회 사 무 국 장</p> <p>동 장</p> <p>동 장</p> <p>보 건 소 장</p>

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5.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신고 및 변경신고 나. 휴업·재개업 및 폐업 신고 다. 시정명령·영업정지 및 영업소의 폐쇄 따른 청문 라. 서류의 제출·검사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2조 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3조 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, 제59조, 제75조 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7조 	보 건 소 장
6. 결핵 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결핵관리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 나.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 다. 결핵검진 라.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명령 및 취소 마. 입원명령 바. 입원명령등을 받은 결핵환자등의 생활 보호 사. 전문인력 배치 아.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결핵예방법」 제5조 ○ 「결핵예방법」 제10조, 제10조의2 ○ 「결핵예방법」 제11조 ○ 「결핵예방법」 제13조, 제14조 ○ 「결핵예방법」 제15조, 제15조의2 ○ 「결핵예방법」 제16조, 제16조의2 ○ 「결핵예방법」 제18조 ○ 「결핵예방법」 제19조 	보 건 소 장
7. 피임약제 사무 가. 피임약제 및 피임용구의 보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모자보건법」 제12조제2항 	보 건 소 장
8. 산후조리업에 관한 사무 가. 산후조리업의 신고 나. 산후조리업의 승계 다. 산후조리업의 폐업·휴업 및 재개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 ○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제3항 ○ 「모자보건법」 제15조제10항 	보 건 소 장
9.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관한 사무 가. 제공자 등록 나. 제공자의 휴·폐업 다. 제공자의 지위승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○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○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	보 건 소 장
10.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		

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가. 약국개설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 나. 약국폐업·휴업·재개신고 다. 의약품조제·판매장소 예외승인 라. 약국제제 등의 제조품목 신고 마. 보고와 검사, 시정명령, 업무개시명령, 폐기명령, 개수명령, 관리자 변경명령 등 바. 등록취소와 업무의 정지 및 청문 사. 약사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 아.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·징수 자. 등록증 등의 반납·갱신 및 재발급 차.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카. 시정명령	○ 「약사법」 제20조제2항 ○ 「약사법」 제22조 ○ 「약사법」 제23조제2항, 제50조제1항 ○ 「약사법」 제41조제1항 ○ 「약사법」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 ○ 「약사법」 제76조 ○ 「약사법」 제78조 ○ 「약사법」 제81조, 제98조 ○ 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52조, 제55조, 제57조 ○ 「약사법」 제21조의2 ○ 「약사법」 제69조의4, 제75조의2	보 건 소 장
11. 의료기기 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의료기기판매업의 신고·변경·휴업 및 폐업 나. 의료기기수리업 등의 신고·변경·휴업 및 폐업 다. 보고와 검사 등 라. 폐기명령 등 마.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바. 청문 사.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·징수 아. 의료기기감시원의 임명 및 직무범위	○ 「의료기기법」 제17조,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37조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16조,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35조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2조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4조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6조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9조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38조, 제56조 ○ 「의료기기법」 제40조	보 건 소 장
12. 의료기관에 관한 사무 가. 의원·치과의원·한의원 및 조산원 개설신고의 처리(이하 “의원 등” 이라함) 나. 의원 등의 변경신고수리 다. 의료법인·비영리법인 정관변경 사전협의 라. 의원 등의 휴업, 폐업의 신고수리, 의료업의 폐업·휴업 신고수리 마. 업무개시명령 바. 보고와 업무검사 등	○ 「의료법」 제33조제3항 ○ 「의료법」 제33조제5항 ○ 「의료법」 제33조제9항 ○ 「의료법」 제40조 ○ 「의료법」 제59조제2항 ○ 「의료법」 제61조	보 건 소 장

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<p>사. 의원 등에 관한 시정명령, 영업정지 명령·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른 청문</p>	<p>○ 「의료법」 제63조, 제64조, 제84조</p>	
<p>아. 과징금 부과 및 징수</p>	<p>○ 「의료법」 제67조</p>	
<p>자. 과태료 부과 및 징수</p>	<p>○ 「의료법」 제92조</p>	
<p>차.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사무(신고, 지도감독)</p>	<p>○ 「의료법」 제37조, 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규칙」 제3조, 제16조</p>	
<p>카. 특수의료장비의 설치·운영, 지도감독</p>	<p>○ 「의료법」제38조, 「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제2조</p>	
<p>13. 접골, 침구시술소 개설·변경·휴·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·명령과 행정처분 등</p>	<p>○ 「의료법」제81조</p>	보 건 소 장
<p>14.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·변경·휴·폐업 등 신고수리 및 지도·명령과 행정처분 등</p>	<p>○ 「의료법」제82조</p>	보 건 소 장
<p>15.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사무</p>		보 건 소 장
<p>가. 개설등록</p>	<p>○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</p>	
<p>나. 폐업 등의 신고수리</p>	<p>○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</p>	
<p>다. 보고와 검사 등</p>	<p>○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</p>	
<p>라. 시정명령, 영업정지, 개설등록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청문</p>	<p>○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, 제24조, 제26조</p>	
<p>마.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</p>	<p>○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제33조</p>	
<p>16. 치과기공소에 대한 다음의 사무</p>		보 건 소 장
<p>가. 개설등록</p>	<p>○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</p>	
<p>나. 폐업 등의 신고수리</p>	<p>○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</p>	
<p>다. 보고와 검사 등</p>	<p>○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</p>	
<p>라. 시정명령, 영업정지, 개설등록의 취소 및 이에 따른 청문</p>	<p>○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3조, 제24조, 제26조</p>	
<p>마.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등</p>	<p>○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33조</p>	
<p>17.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</p>		보 건 소 장
<p>가. 마약류감시원의 임명</p>	<p>○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8조</p>	
<p>나.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위촉</p>	<p>○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</p>	

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<p>18.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무</p> <p>가. 의약품판매업의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</p> <p>나. 도매업무관리자의 신고 수리</p> <p>다. 의약품도매업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</p> <p>라. 보고와 검사 등</p> <p>마. 업무개시 명령 등</p> <p>바. 폐기명령 등</p> <p>사. 개수명령</p> <p>아.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른 청문</p> <p>자. 허가증 등의 반납·갱신 및 재발급</p> <p>차.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·징수</p> <p>카. 폐업·휴업·업무재개 신고</p>	<p>○ 「약사법」 제45조제1항</p> <p>○ 「약사법」 제45조제6항</p> <p>○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62조</p> <p>○ 「약사법」 제69조</p> <p>○ 「약사법」 제70조</p> <p>○ 「약사법」 제71조</p> <p>○ 「약사법」 제74조</p> <p>○ 「약사법」 제76조, 제77조</p> <p>○ 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52조, 제55조, 제57조</p> <p>○ 「약사법」 제81조, 제98조</p> <p>○ 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41조</p>	보 건 소 장
<p>19.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관한 다음의 사무</p> <p>가.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</p> <p>나. 폐업·휴업·재개업 신고</p> <p>다. 지위승계</p> <p>라. 보고와 검사, 폐기명령 등</p> <p>마. 등록취소 및 청문</p> <p>바. 과태료 부과</p> <p>사. 등록증 등의 반납·갱신 및 재발급</p>	<p>○ 「약사법」 제44조의2</p> <p>○ 「약사법」 제44조의2</p> <p>○ 「약사법」 제44조의5</p> <p>○ 「약사법」 제44조의6, 제69조, 제71조</p> <p>○ 「약사법」 제76조의3, 제77조</p> <p>○ 「약사법」 제98조</p> <p>○ 「약사법 시행규칙」 제52조, 제55조, 제57조</p>	보 건 소 장
<p>20. 의료기관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리</p>	<p>○ 「의료법」 제35조제1항</p>	보 건 소 장
<p>21. 「의료법」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(종합병원·병원·치과병원·한방병원·요양병원·정신병원)에 관한 다음의 사무</p> <p>가. 보고와 업무검사 등</p>	<p>○ 「의료법」 제61조</p>	보 건 소 장

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<p>나. 시정명령, 영업정지명령,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</p> <p>22.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</p> <p>가. 당직 의료기관의 지정</p> <p>나.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</p> <p>다.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및 지정취소</p> <p>라. 구급차 등의 운용 통보(신고) 등</p> <p>마. 구급차 운용의 정지·말소등록</p> <p>바.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확인요청</p> <p>사. 구급차 운행 연한 연장</p> <p>아. 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사항</p> <p>자.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·감독 및 시정명령·정지명령</p> <p>차. 의료기관,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(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), 업무 정지</p> <p>카. 청문</p> <p>타. 과징금 부과 및 징수</p> <p>파. 과태료 부과 및 징수</p> <p>하.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(종합병원 제외)의 응급의료시설 설치신고</p>	<p>○ 「의료법」 제63조, 제64조, 제84조</p> <p>○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4조</p> <p>○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 제35조</p> <p>○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3</p> <p>○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2</p> <p>○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3, 제45조</p> <p>○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5조</p> <p>○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6조의2</p> <p>○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의2</p> <p>○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50조</p> <p>○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55조제3항</p> <p>○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56조</p> <p>○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57조</p> <p>○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62조</p> <p>○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5조의2</p>	<p>보 건 소 장</p>
<p>23.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</p> <p>가. 신고 및 변경신고, 휴업·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</p> <p>나.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</p> <p>다. 지도 및 보고</p>	<p>○ 「의료법」 제16조, 「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」 제7조</p> <p>○ 「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」 제9조</p> <p>○ 「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」 제11조</p>	<p>보 건 소 장</p>
<p>24. 의료기관 영리목적 환자 유인행위 등 금지 행위 중 일부가능 사전승인</p> <p>가.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른 개별적 환자 유치행위 사전승인</p>	<p>○ 「의료법」 제27조제3항</p>	<p>보 건 소 장</p>

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임기관
25. 환자가 여러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가. 응급의료 업무 종사 명령 등 26. 응급장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응급장비 설치 신고 나. 신고한 응급장비 양도, 폐기, 이전 등 신고 27.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.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나.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 ○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의2제2항 ○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 ○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3 	보 건 소 장 보 건 소 장 동 장

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4항제1호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

4. 작성자

성 명	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 김 정 결 (담당: 행정7급 김태희)
연락처	02-2600-6317

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

-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□ 제안이유

「지방일괄이양법」 시행에 따라 자치구로 이양되는 사무 중 구에서 동이나 보건소로 재위임하는 사무를 추가하고, 그간의 상위법령 제·개정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일괄이양법」 시행 및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 신설
- 나. 자치구 권한 사무 중 위임사무에서 누락된 사무 신설
- 다. 사무명,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 정비
- 라. 상위법령 개·폐에 따른 사무의 삭제
- 마. 그 밖에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

□ 검토의견

-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시행에 따라 자치구에 이양된 사무 및 그간의 위임관계 변동이 있는 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,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.

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평가번호	2021 - 22				
자치법규명	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				
평가담당부서	감사담당관	직 급	행정7급	성 명	이경민
입안주무부서	기획예산과	통보(조치)일		2021. 5. 14.	
관련조문		검토결과		조치사항	
개정안 전부		원안 동의		-	

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

관리번호	2021A서울강서023			
정책명	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			
소관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 강서구		
	부서명	기획예산과		
	담당자명	김태희	전화번호	02-2600-6317
담당부서	기관명	서울특별시 강서구		
	부서명	가족정책과		
	담당자명	최은영	전화번호	02-2600-6762
체크리스트 제출일자	2021년 05월 13일			
완료(제외) 통보일자	2021년 05월 17일			

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1년 05월 17일

■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- 제3조(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)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·인가·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,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(이하 “행정권한”이라 한다)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, 다른 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.
-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,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.
 -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,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3. 22.>

■ 지방일괄이양법

제21조(「모자보건법」의 개정)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(「의료기기법」의 개정) 의료기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■ 모자보건법

제12조(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)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.

■ 의료기기법

제16조(수리업의 신고) ① 의료기기의 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(이하 “수리업자” 라 한다)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수리업신고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조허가·제조인증·제조신고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입허가·수입인증·수입신고를 받은 자가 자기 회사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신고를 하지 아니한다.

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

제6조의2(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)

-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(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,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임대차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.
-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⑥ 제1항,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6조의3(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)

-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,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.
-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·면·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